

부산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나55302 판결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현영

피고, 피항소인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2. 8.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4595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다.”를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 아래에 “⑤ 매매 관련 메모에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언제 할지, 잔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나 부동산의 인도와 잔금 지급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 등과 같은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 자체 또는 그 중요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원고들과 피고들이 위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민기, 판사 임상민, 판사 김영환